

P26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	(오) 1-[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9개월] <=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180일 + 예술인으로서의 단위기간(월단위)/12개월		
	(정) 1-[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12개월] <=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180일 +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(월단위)/9개월		
P29 6+6 육아휴직	(오)		
	시작일~3개월	월 통상임금	200
			250
			300
350			
400			
4개월~종료일	통상임금 100분의80	상한150하한70	
		450	
(정)			
시작일~6개월	월 통상임금	200	
		250	
		300	
		350	
		400	
7개월~종료일	통상임금 100분의80	상한150하한70	
		450	
P41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금 지원요건	(오) ②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일정한 피보험자 수에 대해 9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		
	(정) ②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일정한 피보험자 수에 대해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		
P74 장애 특별급여 수급자	(오) 취업가능기간: 정년 만65세		
	(정) 취업가능기간: 정년 만60세		
P87 과태료	(내용 추가) <u>300만원 이하 과태료: 플랫폼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관한 공단의 정보제 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</u>		
P94 고용보험 요율	(내용추가) ⑥ <u>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보험연도부터 3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증가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</u>		

P97 고용보험료 계산	(오) <u>6) 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</u>
	(정) <u>6) 월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</u> <u>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. 다만, 매월 1</u> <u>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.</u>

*p103의 가산금 징수 예외는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가 맞습니다.

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

제24조(가산금의 징수)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. 다만,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동법 시행령

32 조(가산금 징수의 예외) 법 제 24 조제 1 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